



강원특별자치도

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

[시행 2023. 6. 11.] [조례 제5030호, 2023. 6. 9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2.10.14.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13.7.26.>

1. "장수노인"이란 「주민등록법」상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<개정 2013.7.26.>
2. "장수수당"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.<개정 2013.7.26.>

제3조(지급대상자의 범위 등) 이 조례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내에 거주하는 2007년 12월 31일 기준 85세 이상 장수노인으로 하되 지급액,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07.12.28., 2013.7.26., 2023. 6. 9.>

제4조(지급신청 등) ① 읍·면·동장은 지급대상자를 조사하여 지급신청서를 작성, 시장·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·군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한다.<개정 2013.7.26.>

- ② 장수수당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 중지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.<개정 2013.7.26.>

제5조(장수수당 결정 및 지급)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시장·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7.26.>

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장수수당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13.7.26>

제6조(지급의 중지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을 중지한다.<개정 2013.7.26>

1. 수혜자가 사망 또는 도외전출 등으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
2. 수혜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13.7.26.>

부 칙 <제3107호, 2006.3.10>

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강원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(제3232호), 2007.12.28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개정)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"85세 이상 장수노인"을"2007년 12월 31일 기준 85세 이상 장수노인"로 한다.

부칙 <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(제3656호), 2013.7.2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4935호(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), 2022.10.14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, 2023. 6. 9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(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)에서 "강원도"를 인용한 경우에는 "강원특별자치도"를, "강원도지사"를 인용한 경우에는 "강원특별자치도지사"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